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

전 영 실*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에서의 억제 개념을 확대해서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억제이론의 한계 중 하나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과 억제요인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비해 음주운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기통제력, 문제음주가 포함되었을 때에도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 억제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공식적 억제요인이 음주운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억제의 개념을 확대해서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도 공식적 억제요인이 더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 주제어 : 음주운전,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 수치, 당황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박사

I. 서론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7년에 천만대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6,428,177대에 이르고 있다(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가 주는 편의로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정적 결과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위험성과 위법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순철, 1998: 50).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매년 2만건대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8,416건이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지난 10년간 1천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에는 991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경찰청 홈페이지 자료).

이렇듯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법적인 제재였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법적인 제재를 강조하는 억제이론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법 이외의 요인들을 고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억제이론도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연구되기도 한다.¹⁾ 여기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공식적인 억제요인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요인 등을 고찰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억제이론을 확대한 연구들 중에는 이외에도 처벌의 확실성이 어떤 조건하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는 것들도 있다(Matthews and Agnew, 2008).

II. 음주운전의 억제요인과 관련된 논의

1. 이론적 논의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억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억제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 전제는 모든 개인이 합리적 행사를 통하여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행위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 쾌락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법을 준수하거나 위반하게 된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이득보다 법적 처벌로 더 고통받겠다고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으로 본다(Akers, 2004: 44). 억제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한다고 가정한다(Yu, 1994: 355). 억제이론은 이렇듯 법적 처벌에 관심을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처벌의 엄격성은 범죄의 해악이 클수록 그로부터 얻는 이득도 크므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처벌도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의 신속성은 형사제재가 범행 후에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하며,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자의 체포와 처벌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고, 확실하고, 신속하다면 사람들은 범죄로부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것이고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Akers, 2004: 46). 제재의 확실성 및 심각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억제 연구들은 지난 30년이상 범죄학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Nagin and Pogarsky, 2001: 865). 이렇듯 억제이론은 법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후 법적·공식적 제재를 넘어선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비공식적 억제는 범죄와 비행 예방하는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제재와 범죄·비행의 다른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Akers, 2004: 546). 이는 공식적 제재 이외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 있는 억제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렇듯 억제의 개념을 확대해서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Grasmick and Bursik, 1990).

2. 경험적 연구

가. 공식적 억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을 다룬 연구들 중 공식적 억제, 즉 법적인 처벌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보면, 처벌의 엄격성이 음주운전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Yu, 1994)가 있고, 처벌의 확실성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김상균, 2001; Yu and Shacket, 1999)도 제시되고 있다. 유(Yu, 1994)는 음주운전 재범연구에서 제재의 심각성(벌금액수, 면허취소기간), 제재의 신속성(음주운전검거와 벌금 혹은 면허취소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구체화해서 이것들의 억제효과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처벌의 심각성이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벌금액수의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 기회를 감소시켰다. 그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즉각적이며 단순한 수단은 벌금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억제이론의 요소인 법적 처벌의 엄격성이 음주운전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균(2001)은 남녀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면, 3가지 요소 중 처벌의 확실성만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잠재적 음주운전자에게 처벌의 위협을 높게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경찰의 단속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유와 쇠킷(Yu and Shacket, 1999)은 16-24세의 음주를 하는 운전자 993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의 동승과 음주운전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는데,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검거될 가능성에 대한 인지는 음주운전과 어느 정도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다른 연구들에서도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음주운전 판단에서 법적 제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urman et al., 1993; Baum, 1999a). 이는 법적 처벌이 음주운전에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이 음주운전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연구들도 존재한다. 일레로센(2001)은 엄격한 형벌이 음주운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형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식이 낮은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등과 같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엑조렉(Wieczorek, 1994)도 검거가능성과 음주운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 두 가지가 관련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음주를 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자들이 비음주운전자들에 비해 검거위험을 낮게 인식하지는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바움(Baum, 1999b)도 음주운전과 억제의 관계에서 검거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연구에서는 검거의 인지된 위험이 음주운전에 대해 유의미한 억제효과를 갖지 않았다. 이보다는 법이외의 요인, 즉 비공식적 제재의 위협, 음주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인식, 알콜소비 정도 등이 음주운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유(Yu, 2000)는 음주운전 재범 연구에서 처벌뿐만 아니라 알콜문제를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 5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알콜문제가 음주운전 재범에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임을 밝혀 내었다. 가혹한 처벌의 확실성 증가는 음주운전 재범을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알콜과 관련된 범죄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콜문제에 대해 주의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초기 억제이론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음주운전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지만,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억제의 개념을 확대하는 연구들이 수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억제의 개념을 확대한 연구

여기서는 억제의 개념을 확대해서 음주운전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라스미크와 버식(Grasmick and Bursik, 1990)은 비용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주가 부과하는 비용(벌금, 구금 등), 사회적으로 부과된 비용(당황), 자기 스스로 부과하는 비용(수치, 죄책감)으로 구분하였다. 이렇듯 법적인 처벌 외에 당황과 수치, 죄책감을

고려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법적 처벌과 마찬가지로 처벌의 잠재적 근원으로서 기능한다고 고려하기 때문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법적 처벌과 수치의 위협은 음주운전 경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 제재의 위협은 수치, 당황, 이전 범죄를 통제할 때조차 음주운전 경향에 직접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라스미크 등(Grasmick et al., 1993)도 수치, 당황, 법적 제재와 음주운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수치는 행위자가 자신이 내면화한 규범을 위반할 때 발생한다. 이는 대부분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으로 경험되며, 아무도 모르고 행위자만 자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발생할 수 있다. 당황은 행위자가 타인에 의해 승인된 규범을 위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제재이다. 당황은 낙인의 고통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손실과 같이 대부분 즉각적으로 경험된다. 그라스미크 등은 수치와 당황이 법적 제재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수치는 법적 제재의 위협보다 음주운전을 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케로와 패터노스터(Piquero and Paternoster, 1998)도 억제이론에서의 처벌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를 구분하였는데, 첫째 구분은 직접 혹은 개인적인 경험과 간접 혹은 대리 경험의 구분이다. 둘째 구분은 처벌과 처벌회피의 구분이다. 이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대리경험과 처벌·처벌회피가 개인의 음주운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억제 개념을 확대해서 비공식적 억제를 포함하는 연구가 음주운전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한 연구를 확대된 억제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의 억제이론에서는 억제 개념을 법적 처벌에 한정하였지만, 이후 억

제개념을 확대한 연구들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요인 또한 음주운전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 억제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억제 요소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억제이론의 한계 중 하나가 개인적 차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논의(Keane et al., 1993: 31)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억제요인 이외에 개인적 특성들도 포함하여 음주운전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음주운전유무에 따라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참고로 음주운전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은 음주운전자의 신념, 태도, 인성특성이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구별되는지를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Turrisi et al., 1997).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음주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성 차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 각각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어떤 특성이 음주운전에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 음주운전에 영향력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수치(shame)’와 ‘당황(embarrassment)’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믹 등(Gramick et al., 1993)이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수치는 자기 스스로 부과하는 제재로 보며, 이는 죄책감, 후회 등의 감정으로 경험된다고 본다(Gramick et al., 1993: 43). 또한 당황은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제재이며, 낙인이나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잃는 것 등으로 경험되는 것이다(Gramick et al., 1993: 44). 이 연구에서도 이렇듯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스스로 부과하는 제재와 주변에서 부과하는 제재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남녀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4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총 100개 동을 선정하여 각 동별로 1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조사대상자수는 1,007명이었다. 이 자료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성별, 연령, 직업을 할당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별분포는 남녀는 7:3으로 할당하였고, 연령별 비율은 서울시 자가용통근자의 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직업별로는 각 동별로 10명을 기준으로할 경우 남자(7명)는 자영업 3명 이하, 여자(3-4명)는 주부 1명, 사무직 및 생산직 2명, 자영업 1명을 할당하였는데, 이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과도하게 조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먼저 음주운전의 측정은 법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을 말한다. 혈중 알콜농도 0.05%에 해당하는 음주량은 대략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정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은 ‘지난 1년간 소주 2잔 혹은 맥주 500cc 이상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문제음주와 자기통제력을 살펴 보았다. 문제음주는 쇼프와 빙함(Shope and Bingham, 2002)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한번에 소주를 기준으로 2병 이상을 마시는 경우, 술마신 다음날 아침에 전날 일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술마시고 많이 취하는 경우의 세가지 각각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심각한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자기통제력은 ‘나는 당장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일단 하고 보는 편이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그만두는 편이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내 일을 하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충돌될 때 나는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등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²⁾ 자기통제력은 재부호화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음주운전의 공식적 억제요인으로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

2) 자기통제력을 ‘나는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도 포함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였지만, 이 문항은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제외하였다.

다면 반드시 경찰에 적발될 것이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또한 술마신 후 운전할 때의 적발가능성 정도를 묻는 질문을 합하여 구성하였다. 이 문항의 경우 적발가능성이 0-20%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1점, 21-40%인 경우에 2점, 41-60%는 3점, 61-80%는 4점, 81-100%는 5점을 주었다. 이 세 문항을 합하여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중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되는 것이 두렵다’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내가 음주운전 해서 적발되면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음주운전의 비공식적 억제요인으로 수치에 대한 측정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후회를 할 것이다’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당황은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가족들이 비난할 것이다’, ‘내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다’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처벌의 엄격성, 신속성 및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묻는 각 항목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IV. 조사결과

1. 음주운전유무에 따른 특성 평균비교

여기서는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개인적 특성 중 자기통제력과 문제음주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³⁾ 먼저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자기통제력을 비교해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의 평균이 16.70으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

3)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 중 행동이나 태도 특성 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생략하였다. 참고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가구월평균 소득에 따라 음주운전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의 음주운전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교육수준과 가구월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음주운전을 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평균 15.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음주의 경우를 보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가 평균 5.69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4.37에 비해 높았다. 이는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평소 문제음주의 특성을 더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개인적 특성 평균비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자기통제력	음주운전안함	630	16.70	3.44	4.55***
	음주운전 함	239	15.60	3.07	
문제음주	음주운전안함	632	4.37	1.39	-12.62***
	음주운전 함	239	5.69	1.37	

*** $p < 0.001$.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은 음주운전을 안한 경우가 평균 7.59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평균 7.3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안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확실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다.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음주운전을 안한 경우가 평균 3.85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3.56에 비해 높았다. 음주운전을 안한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신속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평균 7.86으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의 평균 7.5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받을 제재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식적 억제요인에 이어서 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을 보면, 수치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평균 11.79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의 평균 11.1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수치심이나 죄책감, 후회의 감정 등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황의 경우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이 8.15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7.67에 비해 높았다.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음주운전 유무에 따른 억제요인 평균비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처벌의 확실성	음주운전안함	632	7.59	1.38	2.11*
	음주운전함	239	7.37	1.36	
처벌의 신속성	음주운전안함	632	3.85	.93	4.10***
	음주운전함	239	3.56	.87	
처벌의 엄격성	음주운전안함	632	7.86	1.52	2.61**
	음주운전함	239	7.57	1.27	
수 치	음주운전안함	630	11.79	2.06	4.20***
	음주운전함	239	11.13	2.08	
당 황	음주운전안함	632	8.15	1.54	4.18***
	음주운전함	239	7.67	1.49	

* p<0.05; ** p<0.01; *** p<0.001.

2.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표3〉과 같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들도 포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를 보면, 문제음주는 성별과, 자기통제력은 성별, 연령, 문제음주와 관련되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적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공식적 통제력에 대한 인식을 보면, 처벌의 확실성은 성별, 자기통제력과 정적으로, 가구월평균 소득과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가구월평균소득은 적을수록 음주운전할 경우 확실하게 처벌받는다 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자기통제력, 처벌의 확실

성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인식도 자기통제력,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공식적 통제력에 속하는 세 가지 요인간에는 모두 정적 관계가 있으며, 자기통제력이 공식적 통제요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억제이론은 행위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데, 여기서의 결과는 자기통제력에 따라 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비공식적 억제요인을 보면, 당황과 수치 모두 성별, 자기통제력, 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과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음주운전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비난, 수치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수치와 당황간에도 정적 관련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과 음주운전의 관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성별과 부적으로, 교육수준,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주와는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또한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들과는 부적으로 관련되었다. 확대된 억제개념들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비슷한 정도로 음주운전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간의 상관관계

	1) 성별	2) 연령	3) 교육 수준	4) 가구 월소득	5) 문제 음주	6) 자기 통제력	7) 처벌 확실성	8) 처벌 신속성	9) 처벌 엄격성	10) 당황	11) 수치	12) 음주 운전
1)	1	-.00	-.11**	.05	-.37**	.08*	.09**	.01	-.01	.07*	.10**	-.08*
2)		1	-.19**	.05	-.06	.09**	-.04	.03	.04	-.01	.03	-.02
3)			1	.10**	.04	.01	.01	-.01	.03	.03	-.01	.07*
4)				1	.04	.02	-.10**	-.01	-.00	.06	.03	.22**
5)					1	-.12**	-.02	-.06	.02	-.11**	-.12**	.24**
6)						1	.14**	.19**	.17**	.22**	.17**	-.06
7)							1	.48**	.40**	.18**	.21**	-.12**
8)								1	.66**	.27**	.30**	-.13**
9)									1	.39**	.42**	-.08**
10)										1	.51**	-.11**
11)											1	-.10**
12)												1

* p<0.05; ** p<0.01

3.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에 대한 회귀분석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 공식적 억제요인과 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4>와 같다. 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이 외에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 각각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음주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1의 설명력은 6%였으며, 성별과 가구월평균 소득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구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 두 변수 중에서는 가구월소득의 영향이 더 컸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2의 설명력도 6%였으며, 문제음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음주가 음주운전에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hope and Bingham, 2002). 이어서 공식적 억제력에 대한 인식의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3의 설명력은 2%였으며,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신속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적게 하는 것이다. 이 두 변수 중에서는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4의 설명력은 1%였으며, 당황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부터 모형4까지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모형5의 설명력은 13%였으며,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주,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가구월평균 소득과 문제음주의 영향이 같았으며, 다음은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의 순이었다. 앞의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성별,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식, 당황은 모형5에서 다른 변수들과 함께 분석될 때 유의미한 영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 특성, 억제요인, 음주운전의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성 별	-.09**				.02
연 령	-.02				.01
교육수준	.03				.04
가구월소득	.22***				.22***
문제음주		.24***			.22***
자기통제력		.03			-.01
처벌확실성			-.08*		-.06
처벌신속성			-.11*		-.10*
처벌엄격성			.02		.03
수 치				-.06	-.01
당 황				-.08*	-.06
R ²	.06***	.06***	.02***	.01**	.13***

* p<0.05; ** p<0.01; *** p<0.001.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확대된 억제개념을 사용하여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즉 억제요인을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으로 구분한 후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요인들을 구성하여 살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억제이론의 한계 중 하나가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이러한 특성과 억제요인들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먼저 음주운전 유무에 따라 개인적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낮으며, 문제음주는 더 심각하였다. 또한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이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 비해 설명력이 높았다. 즉 음주운전에는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억제요인에 비해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 각각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성별,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주, 처벌의 확실성·신속성에 대한 인식, 당황이 음주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가구월평균 소득, 문제음주,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만이 유의미하였다. 공식·비공식적 억제 요인들이 조사대상자의 다른 특성들과 같이 고려될 경우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만을 제외하고서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즉 음주운전 억제에는 억제요인들에 비해 개인적 특성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처벌의 신속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특성들이 고려될 때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수치와 같은 비공식적 억제가 법적 제재의 위협보다 음주운전을 더 억제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며(Grasmick et al., 1993), 법적제재의 위협이 비공식적 억제요인 등을 통제할 때조차 음주운전에 직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Grasmick and Bursik, 1990)와 통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인식이 음주운전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받게 되는 처벌이 미칠 영향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문제음주가 심각하며, 자기통제력이 낮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평소 절제된 음주습관이 중요하며, 문제음주자에 대해서는 음주습관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 본 결과 공식·비공식적 억제요인들 중에서는 처벌의 신속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 및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을 하면 신속하게 처벌받겠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최종 모형에서 처벌의 확실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신속한 처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처벌의 확실성일 것이다. 처벌의 확실성이 음주운전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김상균, 2001; Yu and Shacket, 1999). 공식적 억제요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처벌의 확실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처벌의 엄격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의 강화보다는 확실하게 신속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범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을 결정할 때 법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논의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에서 이러한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Thurman et al., 1993; Baum, 1999a).⁴⁾ 음주운전에 대한 비공식적 억제요인들은 최종 모형에서 음주운전 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식적 억제요인의 영향만을 분석한 모형에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비난할 것이라는 인식이 유의미하였다. 평소 가까운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동료의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가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1998). 음주운전이 음주후의 행동인 것을 고려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외에 수치는 음주운전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도덕적인 의식의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수치와같은 내적 요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억제요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음주운전의 억제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여기서의 결과는 억제요인 이외에 문제음주와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음주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음주운전 억제에 필요함을

4)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서도 음주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혈중알콜농도 수준에 대한 지식,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정도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Dunsire and Baldwin, 1999: 64).

보여준다. 또한 문제음주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음주운전에 관련되는 억제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식·비공식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음주운전 억제에 기여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강화 및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 음주운전이 하나의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적인 태도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꼭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www.police.go.kr
- 김상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3사교논문집 제53집(2001. 11), 육군제3사관학교, 2001.
- 이순래·박철현, “음주운전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제3호(통권 제3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홍성필, “음주운전 실태와 예방대책”, 손해보험 339('97.1),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 Akers, R. L.,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한국어판: 민수홍외 역, 「범죄학이론」, 나남출판사, 2005), 2004.
- Baum, S.(a), “An Aggregate Level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Correlates of Drink Driving Offender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1(3): 213-220, 1999.
- Baum, S.(b), “Self-Reported Drink Driving and Deterrenc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32(3): 247-261, 1999.
- Baum, S., “Drink Driving as a Social Problem: Comparing the Attitudes and Knowledge of Drink Driving Offenders and the General Community”,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2(5): 689-694, 2000.
- Brown, S. L., “Associations Between Peer Drink Driving, Peer Attitudes toward Drink Driving, and Personal Drink Driv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5): 423-436, 1998.
- Dunsire, M., and S. Baldwin, “Urban-Rural Comparisons of Drink-Driving Behavior among Late Tee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Alcohol & Alcoholism* 34(1): 59-64, 1999.
- Grasmick, H. G. and R. J. Bursik,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 Society Review* 24(3): 837-861, 1990.
- Grasmick, H. G., Bursik, R. J., and B. J. Arneklev, “Reduction in Drunk Driving as a Response to Increased Threats of Shame, Embarrassment, and Legal Sanctions”, *Criminology* 31(1): 41-67, 1993.

- Keane, C., Maxim, P. S. and J. J. Teevan, "Drinking and Driving, Self-Control, and Gender: Test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30-46, 1993.
- Matthews, S. K., and R. Agnew, "Extending Deterrence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2): 91-118, 2008.
- Nagin, D. S., and G. Pogarsky, "Integrating Celerity, Impulsivity, and Extralegal Sanction Threats into a Model of General Deterrence: Theory and Evidence", *Criminology* 39(4): 865-889, 2001.
- Piquero, A. and R. Raymond, "An Application of Stafford and Warr's Reconceptualization of Deterrence to Drinking and Driv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1): 3-39, 1998.
- Sen, A., "Do Stricter Penalties Deter Drinking and Driv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anadian Impaired Driving Law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4(1): 149-164, 2001.
- Shope, J. T. and R. Bingham, "Drinking-Driving as a Component of Problem Driving and Problem Behavior in Young Adul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3: 24-33, 2002.
- Stacy, A. W., Newcomb, M. D. and P. M. Bentler, "Personality, Problem Drinking, and Drunk Driving: Mediating, Moderating, and Direct-Effec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795-811, 1991.
- Taxman, F. S. and A. Piquero, "On Preventing Drunk Driving Recidivism: an Examination of Rehabilitation and Punishment Approach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6(2): 129-143, 1998.
- Thurman, Q., Jackson, S. and J. Zhao, "Drunk-Driving Research and Innovation: a Factorial Survey Study of Decisions to Drink and Drive", *Social Science Research* 22: 245-264, 1993.
- Turrisi, R., Jaccard, J. and D. McDonnell,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s Relevant to Alcohol-Impaired Driving

- Tendenc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5): 1367-1394, 1997.
- Wieczorek, W. F., Mirand, A. L. and C. P. Callahan, “Perception of the Risk of Arrest for Drinking and Driv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1(3): 312-324, 1994.
- Yu, J., “Punishment Celerity and Severity: Testing a Specific Deterrence Model on Drunk Driving Recidivism”,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2(4): 355-366, 1994.
- Yu, J., “Punishment and Alcohol Problems: Recidivism among Drinking-Driving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8(4): 261-270, 2000.
- Yu, J. and R. W. Shacket, “Drinking-Driving and Riding with Drunk Drivers among Young Adults: an Analysis of Reciprocal Effec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5): 615-621, 1999.

Deterren Factors for Drinking-Driving

Jeon, Young-Si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ormal/informal deterrence factors on drinking-driving, extending concepts of deterrence. One of the limitations of deterrence theory may lie in its disregard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self-control, problem drinking) and deterrent factors on drinking-driving.

To achieve those purposes,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1,007 drivers in Seoul. In this study, socio-demographic/individual characteristics have larger effects than formal/informal deterrence on drinking-driving. However, perception of the celerity of punishment has significant effect even when I include respondents'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lf-control, problem drinking. This result showed formal deterrent factor may contribute to deter drinking-driving. Also, the threat of formal sanctions appeared as a greater deterrent than the threat of informal sanctions.

❖ Keywords : Drinking-driving, Celerity, Certainty, Severity of Punishment, Shame, Embarrassment

투고일 : 2009. 2. 11 / 심사(수정)일 : 2009. 2. 23 / 게재확정일 : 2009. 2. 27

^{*} Rese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